

<p>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2. 제안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4042호 '93.12.31)개정으로 지방교육행정직렬 신설에 따라 기관장의 직급명칭을 변경하고자 함.</p> <p>3. 주요골자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명칭변경함.</p> <p>4. 근 거 지방공무원임용령증개정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2호)</p> <p>5.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3.12.31 대통령령 제14042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전문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고, 공무원임용령의 공직분류체계에 맞추어 행정직군 안에서 5급이하 교육행정직렬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직 분류체계를 개편하였음.</li> <li>•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도서관설치조례중 제4조의 관장의 직위와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 제3조의 관장의 직위인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직급변경하는 것이며, 동일기관 안에서 2개 이상의 일부 개정조례가 하나의 공통된 동기나, 개정이유에 의거 개정할 때는 개정조례의 제명을 일일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일개의 조례 제명만 명시하고 “등 개정조례”로 하는 것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의기준에 합치하는 것으로 사료됨.</li> <li>• 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모든 기관에 두는 5급이하 지방행정직공무원을 새로 신설되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직급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하위의 자치입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됨.</li> </ul>	<p>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質問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問 없으시겠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겠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등증개정조례안</p> <p>제1조(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p> <p>제2조(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p> <hr/> <p>4.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0時 25分)</p> <p>○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	---